

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
- 국세청, 2022. 5

□ (신청안내)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2021년에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
□ (신청대상)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.

○ (근로장려금)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*이 △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, △홀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, △맞벌이가구 3,800만 원 미만이고, 2021. 6. 1.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*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 및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포함

○ (자녀장려금)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·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,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.

□ (신청기간·지급)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, 소득·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. 다만,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
* 5. 31.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, 11. 30.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% 감액됨

□ (신청방법)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○ (모바일) ①모바일안내문의'열람하기→본인인증→신청하기'를 누르거나 ②우편안내문의'큐알코드'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(8자리)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

○ (자동응답전화) ③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(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 생략됨)하여 신청합니다.

○ (미안내자)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·재산요건을 충족하면 ④홈택스(앱)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(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)

- (유의사항) 세무서,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,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(전화상담)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 상담(안내자 신청접수 포함)해 드립니다.

1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

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

-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.

구 분	단독 가구	홀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
총소득기준금액	2,000만 원 → 2,200만 원	3,000만 원 → 3,200만 원	3,600만 원 → 3,800만 원

② 안내문 발송 방식 변경 및 발송 횟수 확대

-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,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-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* 모바일안내문·국민비서 → '신청하기' 누름, 우편안내문 → 큐알코드 비추어 신청

③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

-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·재산요건을 충족하여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, 그동안 홈택스(PC)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
 -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택스앱*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*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, 애플은 App Store에서 '홈택스'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



4 「신청요건·미안내자 신청방법」 동영상 제공

-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「신청요건」 동영상과 「미안내자 신청방법」 동영상을 제공합니다.
 - (신청요건)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모바일안내문에 'URL 주소'를, 우편안내문에 '큐알코드'를 삽입하였습니다.
 - (미안내자 신청방법)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청방법이 간단하지만,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(앱)에 접속하여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1)해야 하므로 따라 하기 쉽도록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2)합니다.
 - 1) (사례) 사업주가 폐업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2) 홈택스(앱)에 접속하여 신청화면*에서 볼 수 있으며, 장려금 상담센터·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여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.
 - * 홈택스: 복지이음(근로·자녀장려금) → 정기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일반신청하기 → 접속 → 동영상
 - 홈택스앱: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) → 일반신청(조회등) → 접속 → 동영상

5 환급신청 계좌 오류 실시간 검증서비스 제공

- 근로·자녀장려금 환급신청 계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오류 입력*에 따른 환급(지급) 지연, 미수령 환급금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였습니다.
 - * 2021년 근로·자녀장려금 환급신청 계좌 입력 오류: 77천 건
 - ※ 계좌오류가 있으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함이 있음

2 2021년 소득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

-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·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.
 - ① (가구 구성) 근로·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배우자·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·홀벌이·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.

구분	요건
단독가구	배우자, 부양자녀('03.1.2.이후 출생), 70세 이상 직계존속('51.12.31. 이전 출생)이 모두 없는 가구
홀벌이 가구	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)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)
맞벌이 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- ② (소득 요건)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(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 및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 소득 포함)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| 총소득 기준금액 |

구 분	단독 가구	홀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
근로장려금	4만~2,200만 원 미만	4만~3,200만 원 미만	600만~3,800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	-	4만~4,000만 원 미만	600만~4,000만 원 미만

*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

- ③ (재산 요건) 2021. 6. 1. 현재 부동산, 전세금, 자동차,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*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.

3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① 홈택스앱 (이용시간: 06시 ~익일 01시)

□ 모바일 안내문

-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'열람하기'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 인증*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.

* 올해부터 기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 이외에 생체인증 방법(지문·face)을 추가함

- 안내문을 열람했다면, 안내문 아래의 ③'신청하기'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

- 문자로 안내문*을 받은 경우,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'열람하기' 주소 링크를 누르고 ②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.

*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톡으로, 미가입자는 문자로 발송함

□ 국민비서 알림* 메시지(카카오톡, 네이버앱, 토스를 통해 제공)

*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메시지 발송함

- 메시지의 ①'신청하기'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

□ 우편 안내문 (모바일안내문·국민비서로 미신청한 경우 발송)

-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'큐알코드'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



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-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, 작년까지는 홈택스(PC)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, 올해부터는 홈택스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② 자동응답전화(ARS): 1544-9944 (이용시간: 06시~ 24시)

- 안내문을 받은 경우,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 - *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지, 처음 신청하는 지로 구분하여 안내문 발송
 -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,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.

③ 홈택스(PC)(www.hometax.go.kr) (이용시간: 06시 ~ 익일 01시)

-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,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 (간편신청하기)
-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, 증거자료(급여수령 통장사본 등)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일반신청하기)

④ 「신청도움서비스」 이용시간: 09시~18시, 점심시간(12시~13시) 제외

- 홈택스앱, 자동응답전화(ARS), 홈택스(PC)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 -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 (신청접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)
 -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: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"장려금" 선택 ⇒ ③번 "일반상담" 선택

4

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.
 - 국세청은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,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 - 국세청은 금융재산*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.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- *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음

-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
 -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안내금액을 계산하였으며, 신청인의 실제 가구, 소득,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.
 -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, 근로·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 -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·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(ARS)·홈택스(앱)으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합니다.
- 신청 완료 후, 홈택스(앱)'심사진행현황 조회'화면*에서 ①신청내역확인, ②심사단계,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- * 홈택스: 복지이음(근로·자녀장려금) → 정기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심사진행상황 조회
 - 홈택스앱: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)→ 심사진행현황 조회
- 금융사기(보이스피싱, 스미싱)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.
 - 국세청, 세무서,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, 카드번호,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 -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(☎112), 한국인터넷진흥원(☎118),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.

참고	주요 문답 사례 (Q & A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사례 1	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?
-------------	---

-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-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('21년 12월 지급)을



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.

사례 2 | 근로·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① 모바일안내문을 발송하고, 미신청한 가구에게 ② 국민비서, ③ 우편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합니다.
 - ① (모바일안내문)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❶ 열람하기를 누르고, ❷ 본인인증을 거쳐 ❸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합니다.
 - ② (국민비서 알림) 카카오톡·네이버앱·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'신청하기'를 눌러서 신청
 - ③ (우편안내문)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'큐알코드'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
 - ④ (자동응답전화)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(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입력 생략됨)하여 신청
 - ⑤ (미안내자 신청)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·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(앱)에 접속하여 신청

사례 3 |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?

- 홈택스(앱)에서 확인* 가능하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- * 홈택스: 복지이음(근로·자녀장려금) → 정기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
 - * 홈택스앱: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) →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

사례 4 |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- 홈택스(앱)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*합니다.
 - * 홈택스: 복지이음(근로·자녀장려금) → 정기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일반신청하기
 - 홈택스앱: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) → 일반신청(조회등)
 - 먼저,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(사례3 경로 참조),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'간편신청하기'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.
-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*하니, 보면서 따라 하시면 편리합니다.
 - 홈택스(앱)에 접속하여 신청화면*에서 볼 수 있으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·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

를 보내드립니다.

- * 홈택스 : 복지이음(근로·자녀장려금) → 정기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일반신청하기 → 접속 → 동영상
홈택스앱 :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) → 일반신청(조회등) → 접속 → 동영상

사례 5 |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?

- 안내문을 받은 경우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.
-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: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.

사례 6 |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?

-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 명에게만 지급됩니다.
-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,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.
 1.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
 2.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
 3.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

사례 7 |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금번 근로·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,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(종합소득세 신고 등)하고, 소득·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사례 8 |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
-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'총급여액 등'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.

| 장려금 지급액 |

구 분	단독 가구	홀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
근로장려금	3만 ~ 150만 원	3만 ~ 260만 원	3만 ~ 300만 원
자녀장려금	-	50만 ~ 70만 원 (자녀1인당)	



*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

사례 9 |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?

-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(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)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① 일용근로자,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 -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(150만 원) 이하인 경우
 -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·공적연금·퇴직·종교인·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(150만 원) 이하인 경우
- ※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

사례 10 |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?

-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* 근로장려금을 지급(환급)하지 않습니다.
- *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